



검색어를 입력하세요.

검색



국가상징
알아보기

이동통신누

일반민원 신청

일반민원 조회

유사민원 공개

일반민원(질의응답)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**국민권익위원회**에서 운영하는 **국민신문고**를 통해 서비스 합니다.

[국민신문고 바로가기](#)

<연락처 안내>

민원신청, 로그인 등 시스템(오류) 문의: 국민권익위원회 1600-8172

환경부 민원(업무)관련 문의: 환경부 민원실 1577-8866

[환경부 부서별 전화번호안내 바로가기](#)

사례

대기관리권역법 TMS 설치관련 문의

1.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기관리권역법 TMS 설치관련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.

질의) 당사에서 운영중인 보일러#1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9년 배출량은 3.1톤/년으로 TMS 설치 대상이나 2020년은 가동시간 감소로 보일러#1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.8톤/년 예상되며 TMS 부착대상 제외 대상이 됩니다. (2021년~2024년 까지도 3톤이하 배출 예상됨)

상기와 같은 경우 TMS 면제 대상이되어 2021년 7월까지 TM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

2020.06.02 15:39:36

답변

1. 안녕하십니까?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(2AA-2006-007 7701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. 문의내용은 ”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,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○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대기관리권역법”)」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나, 가목 1)~6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에 해당되어 부착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, 가동시간 감소 등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6)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○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김태현 주무관(☎044-201-7589, thkim0909@korea.kr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담당부서 대기관리과
관련법령

목록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				
☐ 매우만족	☐ 만족	☐ 보통	☐ 불만족	☐ 매우불만족
				확인
최종수정일: 2020-09-03 14:27				

외청 및 소속기관	관련기관	다른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
---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

[홈페이지 이용안내](#)
[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](#)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
[저작권정책](#)
[환경행정서비스현장](#)
[홈페이지개선의견](#)
[뷰어다운로드](#)

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[고객지원센터\(민원실\): 1577-8866](#)

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,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.

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홈페이지 장애문의: 044-201-6481

Copyright Ministry of Environment. All Rights Reserved.